◉병무청고시 제2021-16호

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

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월 03일

병무청장

1. 관련근거

○ 병역법 제27조(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)

○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

○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~제15조

2. 기본방침

가.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 **필요인원을 최대한 배정**한다.

나. **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소요를 집중 발굴**하고,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감안하여 **방역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을 우선 반영**하여 배정한다.

다. 복무기관장이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'23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**인건비를 반드시 확보**하도록 한다.

라.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명확하여야 하며, **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써 영리성이 없어야** 한다.

3. 배정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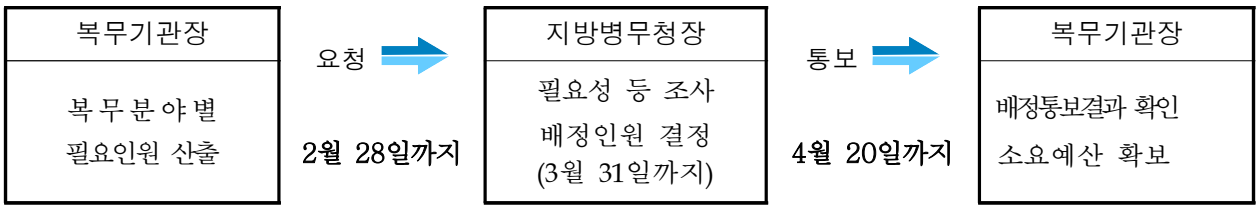
가.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.

나. 복무분야는 사회복지, 보건의료, 교육문화, 환경안전,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.

< 사회복무요원 배정 순위 >

복무분야 \ 복무기관		사회복지시설	국가기관	자치단체	공공단체
사회서비스 업무	사회복지	1	2	3	4
	보건의료		5	6	7
	교육문화 환경안전		8	9	10
행정지원 업무			11	12	13

4. 배정절차



가. 복무기관장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(지)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,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)

단,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.

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,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

나. 지방병무(지)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,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2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.

다. 지방병무(지)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2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5.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

가.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,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,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.

나.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.

다.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'상'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(지)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, 우선 배정 할 수 있다.

6. 복무기관 유의사항

가. 2023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,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(지)청장이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복무기관장(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)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

다.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부담부처(여성가족부, 환경부 등)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.

7. 재검토기한

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